#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이재정・부승찬・박지원

박홍배 • 이기헌 • 안태준

박정현 · 강유정 · 임호선

남인순 · 장철민 · 홍기원

민병덕 · 위성락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·구급대원의 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.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,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.

이에 출동한 구조·구급대원의 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, 유관기 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·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,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# 주요내용

- 가.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·구급대원의 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·구급활동중인 구조·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 시함(안 제13조제2항).
- 나.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에 구조·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,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2).
- 다.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·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,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(안 제14조제3항).
- 라. 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·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·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(안 제28조제2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8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방해하여서는"을 "방해하거나 구조·구급활동 중인 구조·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"으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사실의 확인 등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구조·구급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, 의료기관의 장 등에 구조·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구조·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조·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 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1. 응급환자 등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의 보호
- 2. 실종자의 수색

- 3. 사상자·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 4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
-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방해한"을 "방해하거나 구조·구급활동 중인 구조·구 급대원을 모욕한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·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구조ㆍ구급활동) ① (생 제13조(구조ㆍ구급활동) ① (현행 략) 과 같음) (2) -----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 조・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-----방해하거나 구조 ·구급활동 중인 구조·구급대 아니 된다. 원을 모욕하여서는----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3조의2(사실의 확인 등) ① 소 방청장.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 장은 구조·구급활동에 필요하 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 단체, 의료기관의 장 등에 구조 • 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구조 · 구급대원 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 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조 · 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「개인정보

제14조(유관기관과의 협력) ①・ ② (생략) <신 설>

제28조(벌칙)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(벌칙) ① ------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 · 구급활동을 <u>방해한</u> 자는 5년 -----<u>방해하거나 구조</u>

보호법 | 제23조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 보로서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 호,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응급환자 등 국민의 생명・ 신체 및 재산의 보호
- 2. 실종자의 수색
- 3. 사상자 · 주취자 등의 신원파 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 4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
- 제14조(유관기관과의 협력) ①・
  -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 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 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 력하여야 한다.

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<u>•구급활동 중인 구조•구급대</u>

하의 벌금에 처한다.	원을 모욕한
	<u>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
	•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
	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
	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
	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
	<u>상의 징역에 처한다.</u>